**내부거래위원회 규정**

**주식회사 아이티엠반도체**

제정 2019. 3. 22.

**제 1 장 총 칙**

**제 1 조 (목적)** 이 내부거래위원회 규정(이하 “본 규정”)은 정관 제40조의2 제1항, 이사회 운영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주식회사 아이티엠반도체(이하 “회사”)의 내부거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 2 조 (적용범위)**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 3 조 (직무와 권한)** ① 위원회는 회사와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해관계자 사이의 거래(이하 “내부거래”)를 이사회 결의에 앞서 사전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성과 및 본 규정의 내용을 매년 검토하여, 필요한 경우 본 규정의 개정을 이사회에 건의한다.

③ 위원회는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**제 2 장 구 성**

**제 4 조 (구성 및 임기)** ①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)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.

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사외이사를 위원 총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.

④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**제 5 조 (위원장)** ① 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시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
④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으로 먼저 선임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다만, 선임된 일자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**제 3 장 회 의**

**제 6 조 (회의성립 및 위원회의 소집)**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성립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.

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에 일시, 장소, 의안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4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**제 7 조 (의결방법)**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의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,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②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**제 8 조 (부의사항)**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내부거래의 심의
2. 기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.

**제 9 조 (관계인의 의견 청취)**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**제 10 조 (이사회와의 관계)** ① 제8조 제1호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가결된 경우, 위원회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되도록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내부거래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② 제8조 제1호 외의 기타 안건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
**제 11 조 (의사록)**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다.